

감봉처분취소

소송종류	행정소송	법원명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	사건유형	공무원신분
원고	□□□	피고	인천광역시교육감
판결선고일	[1심]2022. 10. 20. 원고승	비고	
사건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고는 ○○○○고등학교 재직 중 2021. 3. 23. 정문지도 중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한 행동과 발언이 성희롱 사안으로 판단되어, 피고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021. 10. 6. 원고에게 정직 1월 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2022. 2. 3. 정직 1월 처분을 감봉 3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통지 받음. ○ 원고는 피고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며, 감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주 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고가 2021.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3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성희롱이 아닌 단순품위유지의 무위반으로 감봉 3월로 변경되었고, 원고의 행위가 상대방과 같은 처지의 일반인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의성이 없음 ○ 원고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그 징계 기준은 '견책'이며, 피고는 원고의 징계감경사유를 고려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고, 이는 당초 이 사건 비위행위가 성 관련 비위로서 징계요구되었던 사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피해학생이 원고와 합의하며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과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